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7
----------	---------

제출일자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함.(안 제14조)
-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규정함.(안 제28조)

## 개정근거

-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7332호, 2005. 1. 5공포)
- 행정자치부 세제과-1696(2005. 1. 25)
- 경상남도 세정과-811(2005. 1. 28)호의 표준안에 의함.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감면조례”를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17조,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5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 및 제2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 제2항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호 및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7조 제명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로 하고,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7조 제명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의2 제명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으로 하고,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주민등록법”을 “ 「주민등록법」 ”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 「자동차관리법」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 「자동차관리법」 ”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 「자동차관리법」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 「장애인복지법」 ”으로 하고, “주민등록법”을 “ 「주민등록법」 ”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 「자동차관리법」 ”으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 「민법」 ”으로 하고, “의료법”을 “ 「의료법」 ”으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 「노인복지법」 ”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며,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9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2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23조 및 동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4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7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법」 ----- ----- ----- ----- -----.</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상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 ----- ----- 재산세 ----- ----- ----- 재산세 ----- -----.</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 주택 ----- ----- ----- 재산세 ----- -----.</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 ----- ----- -----.</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 ----- -----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u> 제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7. (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u> 제한한다.</p> <p>1. (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u></p> <p>3. (생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u>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u> 경감한다.</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를 면</u> 제한한다.</p> <p>1. ~ 3. (생략)</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u>재산세</u>-----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u>재산세</u>----- ----- 1. (현행과 같음) 2. -----<u>건축물</u> 및 주택 <u>으로서</u>----- ----- 3. (현행과 같음) ②----- ----- <u>재산세</u>----- ----- ----- -----</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u>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 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제12조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제234조의16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u>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2. <u>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면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 한다.</u></p> <p>3. <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p>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p> <p>-----</p> <p>-----1,000분의 1.5를-----.</p> <p>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p> <p>-----</p> <p>-----</p> <p>-----</p> <p>-----재산세-----</p> <p>-----.</p> <p>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li> <li>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math display="block">\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math> </li> <li>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li> </ol>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u>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p> <p>2. <u>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u>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u>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u>을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u>----- ----- ----- -----<u>재산세</u>----- -----.</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u>----- ----- ----- -----.</p> <p>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u>----- ----- ----- -----.</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u>을 경감하고, -----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 -----.</p>
<p>제29조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제29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 -----.</p>